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8. 21 선고 2019가합537038 판결 [구상금 등 청구의 소]

재판경과

서울고등법원 2021. 5. 12 선고 2020나2035012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8. 21 선고 2019가합537038 판결

전 문

원 고 한국무역보험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현산 담당변호사 성창재, 김기현, 이진성

피 고 1. 주식회사 A

2. B

3. C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바른길 담당변호사 문정현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황서현

변 론 종 결 2020. 7. 3.

판 결 선 고 2020. 8. 21.

주 문

1. 피고 주식회사 A, B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577,253,140원 및 그 중 574,977,110원에 대하여

2019. 5. 30.부터 2019. 8. 23.까지 연 1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 B와 피고 C 사이에 2019. 4. 2.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 C은 피고 B에게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등기계 2019. 4. 3. 접수 제8467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 회사 사이의 신용보증약정 체결

1) 원고는 2016. 7. 11. 피고 회사와 신용보증 한도를 567,000,000원, 보증채무최고액을 737,100,000원, 보증기간을 2016. 7. 11.부터 2020. 1. 11.까지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 B는 피고 회사가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부담하는 모든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3)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이하 원고를 '공사', 피고 회사를 '본인', 피고 B를 '보증인'이라 한다)

제8조(보증채무 이행금 등의 상환) ① 본인과 보증인은 공사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공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공사에 상환하겠습니다.

1. 보증채무이행금액(신용보증부대출 원금 및 약정이자)

2. 보증채무 이행으로 공사가 취득한 권리의 보전·이전·행사에 소요된 합리적 비용

② 본인과 보증인은 제1항의 금액을 상환하지 아니한 경우 그 금액에 공사가 정한 납부기한 다음날부터 상환하는 날까지의 날수에 대해 공사가 정하는 연체이율을 곱하여 계산한 손해금을 더하여 공사에 상환하겠습니다.

③ 본인과 보증인은 공사가 대신 지급한 아래의 비용에 공사가 정하는 연체이율을 곱하여 계산한 손해금을 더하여 공사에 상환하겠습니다.

1. 제18조 제3항에 따라 공사가 대신 지급한 보험료

2. 채권의 집행보전(해지 포함), 이전, 행사 및 이를 위한 법적 절차에 소요된 비용

4) 원고는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 제8조 제2항 및 제3항에 적용되는 지연손해금에 관한 규정으로서 국내보상요령을 두고 있으며, 국내보상요령 제30조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인 피고 회사에 적용되는 이율은 연 10%이다.

나. 신용보증사고의 발생 및 원고의 대위변제

1) 피고 회사는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으로부터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발급된 수출신용보증서를 담보로 630,000,000원을 각 대출받았다.

2) 피고 회사는 2019. 3. 22. 위 대출금의 이자 연체를 이유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이에 D은 2019. 4. 15. 원고에게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음을 통지하였고, 원고는 2019. 5. 29. D에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574,977,110원을 대위변제하였다.

3) 원고는 위 대위변제 과정에서 구상금 채권의 집행보전을 위한 비용으로 합계 2,276,030원을 지출하였다.

다. 피고 B와 피고 C 사이의 매매계약 체결

피고 B는 2019. 4. 2. 피고 C와 사이에 피고 C에게 피고 B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2019. 4. 3. 피고 C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등기계 2019. 4. 3. 접수 제8467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 근거] 가. 피고 회사, 피고 B :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150조 제1항)[피고 B는 답변서를 제출하기는 하였으나,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만 답변을 하였을 뿐, 원고가 피고 회사, 피고 B에 대하여 청구원인으로 주장한 사실에 대해서는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고, 이후 법정에서 출석하여서도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는바, 피고 회사, B는 원고의 주장사실을 명백히 다투지 않은 것으로 본다(대법원 1989. 7. 25. 선고 89다카4045 판결 참조)]나. 피고 C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회사,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 회사와 B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577,253,410원(=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대위변제금 574,977,110원 + 채권보전비용 2,276,030원) 및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그 중 대위변제금 574,977,110원에 대하여 대위변제일 다음 날인 2019. 5. 3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최종 송달일인 2019. 8. 23.까지 약정 지연손해금률인 연 10%의, 그 다음 날부터 다투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레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1) 관련 법리

사해행위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 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사해행위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다76426 판결 등 참조).

2)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 C에 대하여 가지는 연대보증채권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인 2019. 4. 2.경 아직 발생하지 않은 상태였으나, 당시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 이미 체결되어 있었고, 피고 C은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부담하는 채무를 연대 보증하였으므로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연대보증채권의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는 이미 존재하고 있었다. 또한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 C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이미 채무초과의 상태에 있었고,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일로부터 1개월도 지나지 않아 피고 회사의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여 원고가 피고 회사의 채무를 대위변제함으로써 피고 회사에 대한 구상금 채권이 발생하였고, 그에 따라 피고 C에 대한 연대보증채권이 현실화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가까운 장래에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연대보증채권이 발생하리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고, 실제로 원고의 연대보증채권이 발생하였으므로,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연대보증채권은 이 사건 매매계약의 취소를 구할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나. 피고 B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1) 피고 B의 채무초과

가) 민법 제406조의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인 ‘사해행위’란 채무자가 적극재산을 감소시키거나 소극재산을 증가시킴으로써 채무초과상태에 이르거나 이미 채무초과상태에 있는 것을 심화시킴으로써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그리고 사해행위취소의 소에서 채무자가 그와 같이 채무초과상태에 있는지 여부는 사해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5다254675 판결 등 참조).

나) 갑 제6, 9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E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나주시청, 해남군청에

대한 각 과세정보제출명령 회신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B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일인 2019. 4. 2. 당시 적극재산으로 이 사건 부동산 등 합계 117,706,955원 상당을 보유하고 있었던 반면, 소극재산으로 최소한 3,003,182,486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적극재산		소극재산	
목록	가액(원)	목록	가액(원)
이 사건 부동산	60,000,000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2016. 5. 26.자 보증채무	1,928,021,000
		원고에 대한 보증채무	574,977,110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 대한 채무	78,838,376
전남 나주시 F 토지	46,569,600	G은행에 대한 2015. 11. 9.자 대출금 채무	50,000,000
전남 나주시 F 건물	9,849,600	기업은행에 대한 2017. 1. 13.자 보증채무	28,049,000
		G은행에 대한 2017. 1. 22.자 보증채무	221,900,000
전남 나주시 H 도로	51,975	G은행에 대한 2018. 3. 27.자 대출금 채무	13,680,000
		I조합에 대한 2018. 8. 3.자 대출금 채무	17,537,000
전남 나주시 J 임야	1,235,780	I조합에 대한 2018. 8. 3.자	90,180,000

		담보대출채무	
합계	117,706,955	합계	3,003,182,486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일인 2019. 4. 2. 당시 피고 B의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것은 계산상 명백하므로, 피고 B는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고 할 것이다.

2)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가) 채무자의 재산이 채무의 전부를 변제하기에 부족한 경우에 채무자가 그의 재산을 어느 특정 채권자에게 대물변제나 담보조로 제공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곧 다른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것으로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고, 위와 같이 대물변제나 담보조로 제공된 재산이 채무자의 유일한 재산이 아니라거나 그 가치가 채권액에 미달한다고 하여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7다18218 판결,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8다85161 판결 등 참조). 사해의사란 공동담보 부족에 의하여 채권자가 채권변제를 받기 어렵게 될 위험이 생긴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이며, 이러한 인식은 일반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있으면 족하고, 특정의 채권자를 해한다는 인식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7다63102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B는 2019. 4. 2.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음에도 피고 C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었으므로 이는 일반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나아가 피고 B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공동담보 부족으로 일반 채권자의 채권변제가 어렵게 될 위험이 생긴다는 사실을 인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B의 사해의사도 인정되며, 수익자인 피고 C의 사해의사는 추정된다.

3) 피고 C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대물변제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 B는 피고 회사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하여 미지급 운송비의 일부라도 변제하여 피고 C에 대한 신용을 유지하고 물품운송을 계속하여야 할 필요가 있었는바, 이 사건 부동산을 대물변제 명목으로 이전하여 준 행위는 사업을 계속하여 채무변제력을 갖기 위한 것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올라 제1호증, 올라 제1호증의 각 기재, 증인 B의 일부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C은 주식회사 K이라는 상호로 운송업을 영위하면서 2017. 4.경 피고 회사와 물품운송계약을 체결하여 2017. 4. 23.부터 2019. 3. 31.까지 실제로 물품을 운송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 C이 피고 회사의 대표인 피고 B로부터 위 물품운송계약에 따른 미지급운송료의 지급에 갈음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넘겨받은 이후 피고 C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K이 피고 회사와의 물품운송계약에 따라 물품 운송행위를 계속한 것으로 볼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바,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피고 B가 피고 회사의 사업 운영을 계속 추진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하여 채무 변제력을 얻기 위해 위 물품운송계약에 따른 이행을 계속하여 사업을 계속 추진하기 위하여 피고 C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넘겨주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단지 기존채무를 일부 우선 변제하여 주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넘겨준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 C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한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 회사는 2018. 12.경까지 피고 C에게 운송비 지급채무를 정상적으로 이행하였고, 2019.

1.경부터 운송료를 지급하지 아니하여 피고 C으로부터 미지급 운송료에 대한 변제를 독촉받자 이 사건 부동산을 대물변제 명목으로 이전해준 것이며, 이 사건 부동산에는 가압류나 압류등기 내지 근저당권설정등기도 되어 있지 않았는바, 피고 C은 피고 회사나 피고 B의 채무초과 상태를 전혀 인지하지 못하였으므로 선의의 수익자이다.

(2) 판단

(가) 수익자는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자신이 선의라는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고,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할 경우에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에 의하여야 하며, 채무자나 수익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 잡아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4다237192 등 참조).

(나) 앞서 든 증거들에 증인 B의 일부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 C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고 C의 악의 추정을 뒤집고 선의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 C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① 피고 회사는 2017. 4.경부터 2019. 4.경까지 피고 C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K와 물품운송계약에 따른 거래를 하였고, 운송료는 다음 달 25일에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며, 실제로는 통상 해당 달로부터 2~3개월 내에 운송료를 지급하여 왔으나, 2018. 10.분 운송료는 2019. 2.경에야 지급하였고, 2018. 11.분 운송료도 2019. 3.말경에야 지급하였으며, 2018. 12.경 운송료는 2019. 5.경 전자어음으로 지급하였고 2019. 1.경부터는 운송료를 전혀 지급하지 못하였다.
- ② 피고 C은 2019. 3.경 피고 B에게 연체된 운송비 지급을 독촉하였고, 이에 피고 B는 피고 C에게 유동 자금이 부족하여 지급이 어렵다고 답변하였다.
- ③ 이에 피고 C은 피고 B에게 주식회사 K의 피고 회사에 대한 운송료 채권을 양수하였다는 통지를 하고 피고 B와 위 운송료 채권의 지급에 갈음하여 피고 B 개인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기로 약정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다음날 바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 ④ 피고 C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이후 피고 회사와의 물품운송계약에 따른 운송행위를 재개하지는 않았고, 피고 B도 피고 C에게 위 물품운송계약의 이행을 촉구한 사실이 없다.

다. 소결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이므로 이를 취소하고, 피고 C은 원상회복으로 피고 B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이지현, 판사 이희준, 판사 정혜원

별지

목

목

1. 전라남도 해남군 L 임야 54,347㎡. 끝.